
입 법 정 보

2017-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5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5
4.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안) (기획재정부)	6
5.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
6.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
7.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7
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7
9.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8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림청)	8
1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
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
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3
17.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4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5
1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6
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7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7
22.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7
2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8
2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9
2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9
2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0
2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0
28.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21
2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22

30.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23
3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24
3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24
3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상청) ……	26
3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26
3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28
3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0
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31
3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32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2
40.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	33
41.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34
42.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국민안전처) ……	34
4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35
44.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기획재정부) …	35
4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6
4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6
4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37
4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38
4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38
5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39
5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39
5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40
53. 「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40
54.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41
5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43
5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43
57.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45
58.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46
59.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47
60. 「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7
61.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48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49
6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49
6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50
6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51
6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51
67.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2
6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2
6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3
7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53
7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54
7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55
73.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55
7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5
7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6
76.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57
7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57
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57
79.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58
80.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59
81.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60
8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1
83.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1
8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3
8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64
8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65
8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65
8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66
89.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67
9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7
91.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69
92.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국방부)	70
9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70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7.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제14497호, '16.12.27)으로 자격 신설·변경 등의 심의를 정책심의회가 전문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신설되어 기존 시행령에 따른 위임 규정을 삭제·정비하고, 검정형자격과 과정평가형자격의 경우에 종목명과 등급이 동일하더라도 시험형태, 취득기준 및 자격증의 형태 등이 다르므로 이중취득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3. 20.
-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한 것을 이유로 위탁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위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4.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여 한 차례만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위탁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또한 법률 개정('17. 1. 17. 시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도 같은 범위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가. 보복금지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 기준 상향조정
 - (현행) 최대 4.0점 → (개정) 5.1점
- 나.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대상 변경(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제한 요청 벌점 기준 → (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제한 요청 벌점 기준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1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별법에 남아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및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배치되는 「평생교육법」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및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안 제46조)

4.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 등의 복제 및 피복의 지급·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5.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6. 관세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현재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서 서식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상향 입법하고,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 등록·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의2)을 신설함.

- 나. 관세사 자격증 서식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

7.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세무사법상 제출해야하는 사진 규격을 범용성 있는 여권용으로 표준화하며 세무사등록 갱신 시 기존 세무사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사시험 응시자들이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시함.

나. 응시원서, 세무사등록, 세무사등록의 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등의 서류 작성시 반명함판 사진 대신 범용성 있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여 사진규격을 표준화함.

다. 세무사등록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종전 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함

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바, ‘16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연 1.8%에서 연 1.6% 로 인하(안 제16조)하려는 것임

9.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독립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채무보증증서를 작성하는 금융·보험기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변경함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3. 20.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2. 공포, 2017. 4.30 시행)으로 신설하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도서지역의 수목원 등록요건 완화
 -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 시 수목유전자원 보유수량을 기존 1,000종류 이상에서 500종류 이상으로 완화함
- 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안 제8조8)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 추가(안 제8조의9)
 - 법 제18조의13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법 제

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 사업에 대한 지원, 산림생물의 보전·활용, 관리원의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이외의 자가 조성한 수목원의 운영 등을 추가함

라.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0)

-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수목원관리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마.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공무원 파견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1)

-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서의 공무원 파견 시 파견요청서에 기재할 사항, 파견자의 복무, 파견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차입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2)

- 차입금의 승인 신청 시 차입처, 차입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등 산림청장에게 제출 시 첨부할 서류를 규정함

사.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신설(안 제8조의13)

-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자의 기부금품에 대한용도지정,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한 장부비치 등을 규정

아.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4)

-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업무보고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경영현황을 규정함

1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매월 신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지 제7호2 서식이 매월분이 아닌 분기분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 별지 제7호의2 서식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중 ‘분기분’ 및 ‘분기실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월분’ 및 ‘월실적’으로 바로 잡음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에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받지 못했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단체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규정함.
- 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에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조정함.
- 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인증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

- 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바. 관세율표 개정으로 면세품목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함.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인간의 자금거래시 적용되는 간주 정상이자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 1) 「국가별보고서」 서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
 - 2) 국가별보고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
-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시 적용 가능한 정상이자율을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거래의 경우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5%를 가산한 이자율로 함

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물납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서식 변경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물납 관련 규정을 삭제함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되, 창업·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 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신설함.
 - 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 라.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열거함.
 -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함.

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및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기관을 변경하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또는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하며, 보험료 합계액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함
-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해당 교육기관으로 변경하되,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 대출, 같은 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금융기관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채권 등을 추가함
- 라.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 이자율을 각각 1.8%에서 1.6%로 인하함
- 마. 주식워런트증권의 손익은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만기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리행사유형을 고려하여 옵션의 손익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함

17.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차 승용차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인 분할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의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30일 이내 단기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 나.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 지배주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분할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 다.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 라.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수관계자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으로 규정함
 - 마.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법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1.8%에서 1.6%로 인하함.
 - 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최근 1개월 이내 것으로 한정하는 등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함.
 - 사.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5개월 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요

청하도록 규정함.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제작비용 범위 등 세부사항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규정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임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함.
 - 나. 신성장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추가함.
 - 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서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 및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환수금액을 제외함.
 - 라.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직전 5년 평균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하 및 특허권 등의 거래로 인한 직전 5년 평균 수입금액이 7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한정함.
 - 마.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강도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로 규정하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 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영화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 제작비용 및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함.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로 규정함.
- 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함.
- 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보증 또는 신용보증에 관한 자료 및 임차보증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대상 합성선물을 규정하고 차익거래 전용계좌의 요건 및 증권거래세 면제한도의 계산방법 등 차익거래의 세부 내용을 마련함.
- 타.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금액기준을 마련함.
- 파.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신성장기술과 직접 연관되는 소재·공정 등의 기술을 추가함.
- 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삭제함.
- 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해당 서식을 개정함.

1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게 되고, 예술품등 그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전문매

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6. • 마감일자 : 2017. 2. 20.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2. 7. • 마감일자 : 2017. 3. 20.
-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대체(제3조제1호, 제3조제5호, 별지 제1호 서식)
- 나. 법인 설립허가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13조)

22.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2. 7. • 마감일자 : 2017. 3. 20.
-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는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부작용 보고 등의 사무 수행할 때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안 제10조의3 신설)

-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통합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제공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 2) 이에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3)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확대(안 제13조의2)

-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하여야 하나,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사용자 정보 보고 및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환자 정보 등에 대해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2) 이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사용자의 자료 등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고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에 대해 민간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 1)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등록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7.
- 마감일자 : 2017. 2. 17.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24.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7. • 마감일자 : 2017. 2. 17.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2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7. • 마감일자 : 2017. 2. 13.
- 현행 국방부 개방형 직위의 적합성 재검토에 따른 직위 변경 사항을 직제에 반영하고, 국방민원상담센터를 총액인건비제팀으로 신설하며, 국방여성정책과를 인사기획관실에서 보건복지관실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내 실·국간 업무를 조정하고, 사이버안보 기능 및 예방의학 분야 보강 등을 위해 국방부 본부 13명(5급 6명,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방전산정보원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 ○○.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지침에 따른 합격자 전직(기계운영서기보 → 행정주사보) 및 직급 조정(속기사, 기록연구사, 국립서울현충원 운전

서기보 1명)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7. • 마감일자 : 2017. 2. 13.
- 찾아가는 병무청 등 병무민원 토털케어서비스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고객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부서의 사무를 지정하기 위함
-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신설하는 고객지원과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인 한시조직으로 설치
- 공중보건 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확대, 기록물 관리 전문성강화 및 신설되는 고객지원과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
- 결핵 발병 획기적 감소를 위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
- 기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기능직 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을 증원하였으나,
- 전환시험 합격자 11명을 채용하고, 잔여 정원 17명(행정 8급16, 전산·방송통신 8급1) 합격자가 없어 결원 운영되고 있으며,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특례규정이 폐지('16.12.31.)됨에 따라 전환시험 합격자채용으로 제한한 일반직 정원(잔여정원 17명 : 행정 8급16, 전산 또는 방송통신 8급1)에 대한 채용 제한 부칙을 해제하여 해당 정원을 활용하고자 함

2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7. • 마감일자 : 2017. 2. 13.
- 국제계약의 협상·분석 능력 강화와 피아식별장치의 성능개량 사업관리를 위한 인력을 소속기관에 증원(사업관리본부 5급 1, 계약관리본부 5급 1)하며, 현 청사의 과천 이전에 따라 시설관리 인력 6명 (관리운

영직 6명)을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달원 관리 기능 등을 일원화 시키고, 민간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형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며, 조직 정비를 위하여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8.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2. 7. • 마감일자 : 2017. 2. 27.
- 「재외공관 공증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그밖에 규정의 흠결을 해소하며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증담당영사 교육수료 의무화 (안 제1조의4)
개정법에서 공증담당영사 교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2조제3항), 공증담당영사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공증담당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
- 나. 공관 밖 장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설정 (안 제1조의5)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 밖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법 제3조제2항 단서), 순회영사,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관 밖에서도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촉탁거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조의6)
개정법에서 공증담당영사가 촉탁 거절하는 경우 촉탁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9조의2) 이의신청의 방법, 처리기간 등을 정함.
- 라. 위임장의 진정성 증명 방법 추가(안 제16조)
 -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인 위임장의 경우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라는 문제점이 있음.

2)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로서도 증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정함.

마. 서식 정비(안 제34조, 제35조, 별지 제39호부터 제43호까지 서식)

개정법이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0조제2항),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에 따라(법 제30조, 제30조의2) 각각의 서식을 구분하여 마련

바.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 추가(안 별표3)

1)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에 고용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와 함께 빈번히 활용되는 재직증명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함.

2) 상기 확인 서류에 재직증명서를 추가하고, 아울러 인감증명 위임장 외 외교부 지침으로 인정해 온 인감 관련 서류 3종을 법령상 추가함.

사. 용어 및 서식의 수정(안 별지제9호 등)

개정법이 “공증담당영사관” 대신 “공증담당영사” 로 용어를 수정함에 따라(법 제2조1항), 용어 및 서식을 수정함.

2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2. 7. • 마감일자 : 2017. 2. 14.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급증하는 처분 불복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16.12.23)에 따른 대리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16.1.25)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보호대상이 된 중견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운전업무 역할 축소에 따라 운전기능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2.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과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16.12.23)에 따른 법령 운용 등 관련 업무를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분장사무로 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 16.9.30)으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및 제조업감시과 분장사무에서 관련 사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30.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2. 8. • 마감일자 : 2017. 2. 13.
- 미래창조과학부에 달탐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바이오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범부처 연구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성 평가 및 출연연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채널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용주파수 수급체계 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 재해 대응 기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방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고출력전자파(EMP) 안전성 평가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 7급 1),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새로운 방송통신기기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 제정을 위해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의 직급을 상향(4·5급→4급)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의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의 업무 명확화를 위하여 그 명칭을 연구성과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중 다자협력담당관을 구주아프리카담당관으로,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을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 신설되는 자연사전전문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국립중앙과학관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의 특별 감사업무 확대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하며, 일부 부서의 업무를 현행화시키는 것임

3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2. 8. • 마감일자 : 2017. 2. 20.
-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사안을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필요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12조의3)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함

32. 기획재정부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8. • 마감일자 : 2017. 2. 13.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과 대외경제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를 각각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 중 3명(5급 3명)은 증원하고 2명(4급 2명)은 기획재정부 4급 또는 5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계약심사 분쟁조정 대응 및 과징금 부과 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부담금 타당성 심사 및 존치 필요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4대 권역별 자유무역협정 전담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법인세 관련 제도개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탁기금 사업관리 및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건전 재정 기초 정착을 위한 사전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감사기능 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등을 증원하며, 재정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재정관리국장이 분장하던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두는 한시조직인 경영정보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로 연장하면서 그 한시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3.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재정집행관리과장, 경제협력기획과장의 분장사무를 각각 정하고,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분장사무를 재정기획국으로 조정하는 등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소수직렬인 운전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서기보 1명을 운전주사로 조정하며, 성과평가제 한시기구의 정원표를 별표 6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 예고일자 : 2017. 2. 8. • 마감일자 : 2017. 2. 13.
- 항공기상청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기상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운전직 정원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정보통신기술과 및 기후정책과의 폐지된 업무의 분장사무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8. • 마감일자 : 2017. 3. 20.
-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2015.1.6)에 따라 변경된 소속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대납경비 근거 마련 및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권한의 위임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일부개정 (2016.12.2 공포, 2017.6.3 시행)에 따른 조문의 정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 소속기관의 명칭 수정(안 제3조제2항, 제3항 및 제15조)
 - 1)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과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속기관 명칭 반영
 - 2)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장”으로 약칭)”으로 수정
- 나.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과 관련 시정·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의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 법률 제20조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조문 용어 정비
- 2)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과 관련 시정·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의 대상을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변경
- 3)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위탁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용어정비를 통해 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처분 대상자 명확화 기대

다. 항만시설보안료 대납경비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 1) 항만시설보안료의 일괄징수 및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고지가 가능하나 대납경비 지급 근거 미비로 개선 필요
- 2)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인 경우 「항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항만시설사용료 대납경비 조항을 준용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근거 마련
- 3) 항만시설보안료의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고지에 따른 대납경비 일원화 및 대납경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운영 기대

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마련(안 제41조의2제7항)

- 1) 법률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54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또는 변경승인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관련 고시 제정 시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중복행정으로 개선 필요
- 2)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기준 등과 관련된 고시 제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삭제
- 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효율 향상 기대

마. 권한의 위임(안 제15조제23의2호 신설)

-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유사 입법례인 「항공보안법」의 사례에 따라 지방 소속기관장으로 위임 필요
- 2)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해양수

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3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8. • 마감일자 : 2017. 3. 20.
-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2015.1.6)에 따른 소속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의 일부개정(2016.12.2 공포, 2017.6.3 시행)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기준 등의 마련과 감사원의 2016년도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항만안전분야) 감사결과(2016.8)에 따른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 제도 개선(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1)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시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74. SORAS) 제11-1장 제5규칙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2)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 첨부 서류에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포함
- 나. 국제항해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 마련(안 제26조제5항 신설)
 - 1) 국제항해여객선의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과 혼란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정하여 고시 필요 (법제처의 현장간담회 건의사항(2015.11.18.) 수용)
 - 2)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 국제항해여객선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도 도입(안 제27조제3항 신설)
 - 1) 감사원의 2016년도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항만안전분야) 감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통보 시 자격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제도 부재로 개선 필요성 지적

2) 지방청장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6호의2서식(신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심사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라.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기준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2016.12.2 공포, 2017.6.3 시행) 제31조제3항에서 위임받은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기준 마련 필요

2) 유사법령인 「항공보안법」의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기준을 고려하여 항만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기준을 정함

가) 자격요건 -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일 것

나) 동시접안능력 200만톤 이상인 무역항(부산, 인천, 울산, 광양항) -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력인 특수경비원 수 100명 이상

다) 동시접안능력 100만톤 이상인 무역항 ~ 200만톤 미만(포항, 평택·당진, 대산항) -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력인 특수경비원 수 50명 이상

라) 동시접안능력 100만톤 미만인 무역항 - 자본금 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력인 특수경비원 수 20명 이상

3) 항만보안 경비·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특수경비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안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 및 계속성 확보가 기대됨

마. 내부보안심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도 도입(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감사원의 2016년도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항만안전분야) 감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 및 자격심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2) 항만시설소유자가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시 별지 제23의2호서식(신설)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변경지정 통보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청장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신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심사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바. 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46조제2호 및 제3호)

1) 2014년 11월 해양수산부의 한국선급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정기준의 과도화로 완화 필요성 지적

2) 해양수산부의 유사 정부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요건은 10명에서 7명으로, 광역시·도 등의 지방사무소 수는 9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완화

사.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 개선(안 별표 4)

1) 2016년도 감사원의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국가보안시설주요 출입구의 경비원 1인 배치 부적절과 보안울타리 및 CCTV 설치 기준 등 강화 필요성 지적

2)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함(세부 내역 [별표 4] 참조)

3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2. 9. • 마감일자 : 2017. 2. 14.

○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복지정보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2017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기구의 분장사무, 증원인력, 기타 직급·직렬 조정사항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부내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일부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요정원 증원 : 28명

- 본부 +1과, +11명(4급1, 4·5급1, 5급6, 6급3),

- 소속기관 +17명(5급1, 6급1, 7급5, 8급5, 연구관1, 연구사4)

나. 지진대응 인력 증원 : 본부 +1명(5급)

다. 업무분장

- 정책기획관 내 재정은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함

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2. 9. • 마감일자 : 2017. 3. 2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305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임·위탁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 마련,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유기양봉 제품 및 애완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정권한의 위임 업무 개정(안 제5조)
 - 1) (제·개정 주요내용)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신설된 인증기관의 평가·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유기 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명예감시원 운영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2) (제·개정 사유) 인증기관의 평가·등급제 등을 신설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공포(‘16.12.2)에 따른 시행령 개정
-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7조)
 - 1) (제·개정 주요내용) 친환경 인증품·유기농업자재 및 인증심사원·인증기관·공시기관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 2) (제·개정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38. 제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2. 9. • 마감일자 : 2017. 2. 16.
-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이 폐쇄 등의 사유로 기관 운영을 중단하거나, 한국학교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원의 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인사처리 규정이 일부 미비하여, 현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유 발생으로 중도 복귀한 파견공무원과 계약 해지된 사람이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파견 또는 채용 선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응시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공무원을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전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2. 9. • 마감일자 : 2017. 3. 21.
- 다수의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P2P(Peer-to-Peer)대출’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법령상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여 P2P 대출의 투자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밖의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P2P대출 관련 업자에 대한 법령상 정의 도입
온라인을 통해 P2P대출을 중개하는 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함
- 나.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신설
기존 대부업자와 영업형태와 구조가 상이하여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록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다.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적용 제외

P2P대출업의 영업특성, 신용위험 부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보유한 대부채권 전부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채권을 총자산한도 산정시의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대부업자의 전기통신사업 겸업의 범위 명확화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간 겸업을 금지한 법률 취지를 감안, 단순히 대부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광고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겸업이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40.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2. 10. • 마감일자 : 2017. 2. 10.

○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내국인의 투자가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내국인의 투자가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회위원회를 설치함.

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회계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통해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실사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1.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2. 10. • 마감일자 : 2017. 2. 20.
- ‘17.3.30.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2016.3.29. 공포)에 따라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3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42.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2. 10. • 마감일자 : 2017. 3. 22.
- 징계업무의 형평성을 위해 중앙소방학교와 동일하게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의 관할 계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소방경 이하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선(안 제2조)
-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으로 직근 상급자를 추가하고, 회피·기피에 관한 사항 일부 신설(안 제15조)

4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10. • 마감일자 : 2017. 2. 17.

○ 가. 액체형태 담배 용량표시 방법 변경

1) 표시 단위 : 밀리리터 단위

가) 10ml 이상 :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15ml)

나) 10ml 미만 : 소수점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2.5ml)

2) 표시의 크기 :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다만, 포장 표면적이 50cm² 이하인 경우 6포인트 이상)

3) 색상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글자체 : 고딕체

나. 허가증 등의 재발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조업허가증, 수입업 도매업등록증 또는 소매인지정서가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44.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10. • 마감일자 : 2017. 2. 20.

○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내국인의 투자가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내국인의 투자가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회위원회를 설치함.

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

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회계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통해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실사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2. 10. • 마감일자 : 2017. 2. 13.
- 국내외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 변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보강하려는 것임
- 가.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회계제도 선진화 및 감독 강화, 금융감독 개선, 국제협력 강화, 투자금융 활성화 지원 관련 7명 증원(4.5급1, 5급6)
- 나. 선제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인 금융정책국 기업구조개선과에 한시정원 3명 증원(5급2, 6급1)

4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2. 10. • 마감일자 : 2017. 3. 27.
-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새만금사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

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34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국·공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장기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국내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종류, 인용조항, 용어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종류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 및 인용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함 (안 제3조, 제14조 및 제17조제7항)
- 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회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의3)
- 다.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가 허용되는 기업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면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함 (안 제32조).
- 라. 새만금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인 100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1조의2 신설).
- 마. 「건축법」 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2조의2 신설).

4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10. ● 마감일자 : 2017. 3. 22.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를 규정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마련

48. 외교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2. 10. • 마감일자 : 2017. 2. 15.
- 국제 금융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하여 재정경제금융분야 주재관 2명(4급 2명)을 증원하고, SOFA주관부처로서 협의체간 계급 격차 해소와 최근 고위급 회의 증가 대응을 위해 한미지위협정과를 신설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테러 업무 수행 및 재외공관 대테러 안전조치 강화, 북핵관련 UN 안보리 결의사항 이행관리 전담팀 구성,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5급 3명, 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2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7등급 정원 1명의 직급을 8등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4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27.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기존 해당 장치 및 부품을 지자체장에게 반납하던 것을 해당 장치 및 부품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489호, 2016.12.27. 공포, 2017.12.28 시행)됨에 따라, 반납 금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잔존가치는 해당 장치 및 부품에 들어있는 귀금속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귀금속의 종류, 함량, 거래가격 등 잔존가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고시로 정함 (안 36조의10제3항 신설)

5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27.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기존 해당 장치 및 부품을 지자체장에게 반납하던 것을 해당 장치 및 부품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12.27 공포, 2017.12.28 시행)됨에 따라, 반납 금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잔존가치는 해당 장치 및 부품에 들어있는 귀금속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귀금속의 종류, 함량, 거래가격 등 잔존가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고시로 정함 (안 79조의4제3항 신설)

5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31.
-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 됨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는 기준과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5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2. 21.
- 수입식품과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영양안전국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각각 식생활 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식품·의약품등 안전기술진흥 기본계획수립 등 연구개발 정책 수행 관련 기능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및 농축수산물안전국의 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수입 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및 수입 유통안전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생활소비안전국에 농축수산물안전국의 국내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식생활영양정책과, 농축수산물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국민식생활 안전을 통합수행하며, 식품영양안전국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식품안전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하부 조직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연구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1명(5급 1명)을 본부로 재배정하고, 식중독 원인체인 미생물 위해분석 수행을 위해 본부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재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3.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2. 23.
- 「수도법」에 산재된 전산망 구축·운영을 동법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가 통합하여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또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최초

교육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함

아울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시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사용량 등을 근거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 가.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설 개정(안 제50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대체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수도관리에 관한 교육 주기 개정(안 제52조)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일반수도사업자는 1년 이내에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업무 조정(안 제60조)

협회 업무에서 “수도에 관한 통계 작성과 관련 도서 발간” 삭제

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제65조1항 개정)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고려사항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용량을 명시하여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마. 전산망 통합운영 등 신설(안 제65조의2)

「수도법」에 산재된 각종 분야의 전산망 구축·운영을 동법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54.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27.

-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시 제출되는 시험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수입)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수입업 신고 및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사항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물용 의약품등의 동물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및 비임상 시험의 실시기관 지정 및 준수 사항 마련(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동물용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시험성적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준수사항 등 관리체계를 구축함
- 나.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도매업무 관리자 교육실시 세부규정 마련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안 제13조의4, 안제13조의5)
동물용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안 제15조의2)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업 신고를 통해 수입업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함
- 마. 수입 품목 허가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대상 품목 확대(안 제16조제1항제1호 라목)
생물학적제제(백신) 외에 완제 동물용의약품(주사제, 액제, 산제, 주입제 등)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통해 수입제품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 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설정(안 제22조제1항제18호, 별표제6의 4)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보관시설, 공급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위생 관리 등 준수기준을 설정하여 유통단계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 동물용 의약품등 품질 및 효력 미흡제품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실효성 확보
동물용의약품등 유효성분 함량 미흡(초과)비율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역용 소독제 효력검증 시 효력미흡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 관리체계 구축

5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27.
- 보편적 역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내전화 및 공중전화서비스에 대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사전규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점유율 규제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필수설비 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제공 의무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내전화·공중전화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 선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1항 제1호·제2호)
시내전화의 경우 손실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성이 낮은 인구밀도, 회선수 기준을 삭제하고, 공중전화의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비용 및 수입’ 특성에서 ‘장소 특성’으로 변경하여 실제 공중전화에 필요한 장소에 공중전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나. 사전규제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 개선(안 제39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필수설비 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을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함

5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27.
- 기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16.12) 관련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 경매장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및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래 축산물 표시대상 확대와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자영업자 폐업신고 불편 해소대책’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대상 일괄 정비(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0조 제2항)

동물등록 신청(변경), 재발급, 영업자 등록(신고) 신청(변경)시 신청자 본인 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일괄 정비

* (현행) 등본·초본 → (개정) 초본

나.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제9조제5항)

소유자 주소 변경시, 지자체 방문 대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다.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제19조 별표5)

보호 중인 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동물의 경우 지체 없이 동물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 대상동물의 경우 등록 실시 명시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한 동물사체 처리방식 개선*

* (현행) 「폐기물관리법」처리 → (개정) 「폐기물관리법」 또는 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 처리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제33조제1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

* (현행)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 →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마.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기준 보완(제35조제2항 별표9)

경매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기준* 마련

* 경매장 구분 설치, 운영인력, 각 실별 구비장비 및 설비 명시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화장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개수 제한*

* 화장로 설치(개수) : (현행) 제한없음 → (변경) 3기 이내

바.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제36조)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에 대한 영업자 정의를 변경*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영업자 판매대상 확대

*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수입업은 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으로 함

사. 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라 폐업신고시 동물 관련 영업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아.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제43조 별표10)

경매시설에서 경매 시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 경매수수료 사전 고지, 경매 참여시 제출서류, 출하개체에 대한 자가 검사 매뉴얼 마련 및 수의사 검사, 경매상황 녹화 등 기준 마련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 위해 판매는 직접 대면하여 판매토록 하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 명시

자. 영업자 행정처분기준 강화(제45조 별표11)

동물 관련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변경신고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 실효성 제고 위해 행정처분기준 상향*

*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57.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27.

○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조사대상(안 제2조 개정)

인구동향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나. 조사사항(안 제4조 개정)

영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출생에 관한 사항은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등을, 혼인에 관한 사항은 결혼생활시작일 등을, 이혼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종류 등을 조사사항으로 함

다. 자료의 제출(안 제5조 개정)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에게 조사사항을 통보 하여야 하고, 통계청장은 통보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16조 신설)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자료의 접수·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58.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통계청)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6.

○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이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등의 자료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공포, 12. 27. 시행)됨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절차,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조사범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

나.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안 제25조 제1항 개정)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조사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제4항 신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조사범위·방법(안 제39조의2 및 제 39조의3 신설)

1)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필요로 하며, 조사하도록 함.

2) 통계청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국적, 혼인상태, 이혼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9.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27.
- 통계작성 승인 시부터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준 적용 및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통계작성 승인 신청”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60.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2. 13. • 마감일자 : 2017. 3. 27.
-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표지 등의 설치기준(안, 별표 4)
도로 지하매설물의 표지 설치대상에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송전선로, 전기통신관, 송열관, 광역상수도시설,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수도 외

에 그 밖의 지하매설물도 도로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표지에 삽입 또는 부착하여 보다 많은 매설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려는 것임

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27.
-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하면서 유료방송 공짜·저가 마케팅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가입 전 또는 해지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이용자 개념(안 제50조제1항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서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 금지행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광의의 이용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나. 결합판매서비스 개념(안 제50조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금지행위 중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및 중요사항의 미고지 행위에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함
- 다. 사실조사 대상(안 제51조제1항 개정)
 - 현행 규정은 사실조사 이전에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업자가 사실조사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27.
- 농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16.5.29. 공포, ' 17.5.30. 시행예정 및 ' 산물의16.12.2. 공포, '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대리참석 사유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별표 제3호 서식 신설)
교육 이수명령 받은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구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종사자 중에서 대리참석 가능
질병, 부상 등으로 원산지 교육을 연기 할 경우 신청서식 마련
-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신설(안 제4조의2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의 신청서식 신설
- 다. 원산지표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내용 마련(안 제7조 신설)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 기여, 지도 점검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노력 등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시상
- 라.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배달판매 표시방법 마련(안 별표 1 개정)
배달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꼬리표,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6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27.
- 농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16.5.29. 공포, ' 17.5.30. 시행예정 및 ' 산물의16.12.2. 공포, '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홈페이지별 원산지 위반자 공표기간 통일(안 제7조제2항 개정)
 기관 홈페이지(12개월)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6개월)의 상이한 공표기간을 현실에 맞게 12개월로 통일
- 나.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교육내용: 관련 법령 및 표시방법 위반자 처벌사항 등
 교육대상: 미표시 2회 위반자 및 거짓표시 위반자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 2시간 이상
- 다.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의 위탁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항, 제5항 신설)
 통관단계의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
- 라. 과징금 부과기관, 부과시점 및 산출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개정)
 2년간 2회 적발시 두 번째 적발기관에서 과징금 부과
 위반금액 3천만원 이상의 산출 구간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산출기준 개선
- 마.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개정)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50만원)와 외국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00만원)가 달라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불리한 처분을 받으므로 부과기준을 일치

6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27.
-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운용 가능한 지역채널 수 제한을 완화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규제 폐지(현행 제4조 제5항제3호 삭제)
- 나.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법인별 허가 신청(안 제5조 제2항제3호)
- 다. 유선방송국의 운용채널·시설 변경시의 허가 폐지(현행 제15조제2호 삭제)
-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 지역채널 운용 허용(안 제55조제1항)

6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27.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요청 범위 확대(안 제14조)
- 나.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15조)
- 다.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 폐지(현행 제20조 삭제)

6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27.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유선방송국 설치·변경시 요구하는 준공검사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유료방송 사업 전부 또는 일부 휴·폐업시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홈쇼핑사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 승인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한 고

- 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기준 추가(안 제10조제1항 제6호의2 신설)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및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 고시 제정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신설)
 - 다.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77조)
 - 라. 준공검사 제도의 폐지(현행 제79조제2항 삭제)
 - 마. 유료방송 전부 또는 일부 사업 휴·폐업 시 승인제 도입(안 제84조 제3항 및 4항)

67.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6.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과 절차가 유사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연계를 위해 교육비 지원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통보기한을 교육급여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91조제3항)

6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6.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던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근거 조항이 초·중등교육법으로 상향 입법되어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16.12.20, 시행일 ' 17.3.21.)에 따라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제5항 및 제6항 삭제

나.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4조의7 제1항 제6호)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4조의8)

6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6.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제5항 및 제6항 삭제

나.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4조의7 제1항 제6호)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4조의8)

70. 법무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2. 20.

○ 법무부에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고위험범법 정신질환자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병동 운영 인력 24명(6급 2명, 7급 10명, 8급 12명)을 증원하며, 보호관찰소에 치료명령제도의 운영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등 37명(6급 7명, 7급 30명)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기관에 수용자의 정신과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4급 5명)을 증원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0명(6급 6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7명)을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의 존속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로 연장하고 정원을 1명(7급 1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6급 정원 1명을 5급 1명으로 조정하고, 현장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무부의 9급 정원 3명을 6급 1명,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법무연수원의 9급 정원 2명을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지방교정청 등의 9급 정원 9명을 7급 5명 및 8급 4명으로, 치료감호소의 9급 정원 8명을 6급 1명, 7급 3명 및 8급 4명으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9급 정원 2명을 8급 2명으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9급 정원 2명을 8급 2명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9급 정원 1명을 8급 1명으로 각각조정하며, 교정기관의 원활한 의료인력 확보로 수용자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정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 정원 35명(4급 22명, 5급 13명)을 53명(4급 35명, 5급 18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9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사무운영서기보에서 통신운영서기보로 조정하여 정원을 현행화하고 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에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2. 24.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의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법령서식을 정비하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14.8.)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16. 3. 29. 개정, '17. 3. 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7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2. 14. • 마감일자 : 2017. 3. 6.

○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체부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설치

○ 가. 위원회 기능

건립 기본계획, 설계, 공사,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함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2) 구 성 : 위원장 2명 포함, 25명 이내

- 위 원 장 : 문체부 제1차관, 건립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

- 위 원 : 문체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인천시 국장급 이상, 민간 전문가*

* 언어·문자, 박물관, 문화·예술,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교육·과학, 건축·설비, 지역 등 분야 전문가

73.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15. • 마감일자 : 2017. 2. 27.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며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7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15. • 마감일자 : 2017. 3. 29.

○ 검사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업무 담당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종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5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변경신고 사항에 법인의 임원을 추가

나.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36조의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함

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분야 기술인력 신설(안 별표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시료채취 분야(1명 이상)를 신설하고, 시료채취와 현장항목에 한해 측정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라. 시료채취기록부 등 자료의 작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 8의2)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작성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마.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9)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7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2. 15. • 마감일자 : 2017. 3. 27.

○ 현행 고용형태 공시제는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합산하여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공시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업무를 공시하도록 변경

76. 전문수사지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15. • 마감일자 : 2017. 2. 27.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검사 및 전문수사지문위원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7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2. 15. • 마감일자 : 2017. 3. 27.
- 가.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의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공평·타당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함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 혼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다.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2. 16. • 마감일자 : 2017. 3. 29.
- 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안 제7조, 제79조)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

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 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약국개설자간 지위승계 허용(안 제89조, 제89조의2)

약국개설자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다.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등록 미신청자 과태료 부과(안 제95조, 제98조)

약국개설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79.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16. • 마감일자 : 2017. 3. 28.

○ 귀화 필기시험 실시 및 면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귀화허가 면접심사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부 동반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면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1항)
타 귀화 신청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배우자 1인에 대해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면접 면제 규정 변경 (안 제4조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면접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 귀화허가 면접심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4항, 제5항)

귀화 면접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민간면접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국적상실 등 사실증명 서식 개정 (별지 제14호)

대상자의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나타내도록 서식을 개정함

80.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16.

• 마감일자 : 2017. 3. 28.

○ 가.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동시에 법률 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적상실자 등이 발급받은 한국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안 제4조)

귀화 필기시험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고, 귀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귀화자 등의 외국국적 포기절차 개시기간 구체화 (안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다. 복수국적자 의의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16조)

’ 16.12.20. 복수국적자의 의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가 국적법에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위임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라. 국적상실자 등의 한국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규정 근거 신설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1조, 제27조 등)

국적상실 및 이탈 등을 통해 우리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한국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 및 이탈, 취소 등을 통해 우리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발급받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국적심의위원회 유효기간 삭제 및 위원 수 변경 (안 제28조의 2 등)
국적심의위원회 유효기간을 설정한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 삭제 및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

바.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권한 위임규정 마련 (안 제29조)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수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지방사무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

사. 통보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규정 마련 (안 제31조)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사무소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81.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16. • 마감일자 : 2017. 3. 28.

○ 가.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동시에 법률 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적상실자 등이 발급받은 한국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16. • 마감일자 : 2017. 3. 30.
- 「수산종자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항제1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함
- 나.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
법률에서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83.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16. • 마감일자 : 2017. 3. 28.
-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건전한 어선중개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 [법률 제14510호, 2016.12.27. 일부개정, 시행 2017.6.28.]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 어선거래정보의 이용신청,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법률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안 제62조의2 신설)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매가격, 매물현황, 어선 사고이력, 불법어업 이력 및 금융에 관한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안 제62조의3 신설)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와 수집·생산·관리되는 정보의 처리 및 조직의 업무처리절차 및 운영을 고시함

다. 어선거래정보의 이용신청 등(안 제69조의4 신설)

어선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어선거래정보이용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받은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안 제69조의5 신설)

어선중개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선중개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이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마.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안 제69조의6 및 제69조의7 신설)

어선중개업자의 등록 현황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과 시간을 규정함

바.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안 제69조의9 신설)

어선중개업자가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재개업·휴업연장 신고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행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8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양수신부)

- 예고일자 : 2017. 2. 16.
- 마감일자 : 2017. 3. 28.

○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건전한 어선중개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7. 시행)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거래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어선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어선중개업의 등록 및 취소 등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안 제5조 신설)

어선중개업자의 음성적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안전한 어선중개업으로 정착·육성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등록요건을 마련함

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거래계약서 미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범위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함

다.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안 제8조 신설)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대상물의 표시, 계약일,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권리의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 중개수수료,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신설)

어선거래 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

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으로 거래당사자의 피해보전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을 정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8조의2 신설)

어선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어선중개업의 등록 및 취소 등 같이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함

8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2. 17. • 마감일자 : 2017. 3. 29.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의 설치 위치를 후방 차량이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장자동차의 표지 규정 개선(안 제40조)

1)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자동차의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고장자동차의 표지 규격을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안전삼각대로 함.

나. 주민등록증, 여권 이외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정함(안 제83조의2 신설)

다.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151조, 별지 제167호서식부터 별지 제170호서식까지, 현행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 삭제)

라.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을

30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마. 외래어표기법에 맞도록 “알콜” 을 “알코올” 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29)

바.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 서식상 최대 가산금 요율을 77%에서 75%로 변경함(안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별지 제153호서식)

8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2. 17. • 마감일자 : 2017. 3. 31.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을 ‘사용허가’ 로, ‘사용 경비’ 를 ‘사용료’ 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준용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16.6.8)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승인신청서’ 를 ‘사용허가신청서’ 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14조, 별지 제17호 서식)

나.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경우 타 법 준용조항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함 (안 제15조)

8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2. 17. • 마감일자 : 2017. 3. 31.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을 ‘사용허가’ 로, ‘사용 경비’ 를 ‘사용료’ 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12.27.공포, 2017.6.28.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을 ‘사용허가’ 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90조, 제94조, 제96조)

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제114조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으로, ‘준공검사’ 관련 용어를 ‘준공인가’ 등으로 정비함
-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준공인가 신청 시 필요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9조 및 제90조)
-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정관 위임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1조 제2항)
 - 1)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 를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8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2. 17. • 마감일자 : 2017. 3. 29.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본인 확인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대행 업무로 규정(안 제86조 제5항제3호의2 신설)
 - 나.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안 제98조, 현행 제98조의2 삭제 및 안 제99조, 안 제100조 신설)
 - 1)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 규정을 삭제함.
- 다.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설함(안 별표 6 제1호의2, 제2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 제6호의2, 제11호의5 신설)
- 라. 범칙금 부과규정 신설(안 별표 8)
 -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12만원 또는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주 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89. 선거법적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17. • 마감일자 : 2017. 2. 27.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서식을 개선함

9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17. • 마감일자 : 2017. 3. 29.
-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령은 사업의 관리단계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총 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거나, 정합성이 부족하여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재정누수의 우려가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관리대상 범위를 재정비하여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을 개선하여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의 재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던 관리공백을 해소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사업의 특성상 총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타당성재조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복지·교육 등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재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의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유기

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훈령)」에 근거하여 사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해당 사례금은 신고포상금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 재정비(안 제21조 제1항)

총사업비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 연계성을 제고하여 대규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으로 변경함

나.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범위 조정(안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신설)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총사업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국고 정액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시설·장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어 총사업비 관리의 실익이 없는 과제형 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다.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 개선(안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1) 총사업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경우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총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10~20%이상 증

- 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함
- 라.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근거 마련(안 제22조 제3항 신설)
-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사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전환되었어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여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전환되고,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 실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제4항 신설)
- 완성기한이 없어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의 급격한 증가 또는 재정·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고용·복지·교육 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바.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신설)
-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91.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17. • 마감일자 : 2017. 3. 3.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 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군검사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 등이 군사법원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92.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17. • 마감일자 : 2017. 3. 3.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 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군검사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 등이 군사법원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2. 17. • 마감일자 : 2017. 3. 29.
-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14446호, '16.12.20.공포)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유해행위(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기준과 숙박업자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가.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 조장 제품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기준 (안 제4조제3항 신설)
 - 1)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기준
- 나. 숙박업 운영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안 제27조제1항 신설)
 - 1) 청소년유해행위(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의 나이확인 및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설비